



제 429 회 국 회 (정 기 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애인 등을 위한 스포츠관광권 보장 사업 근거 마련 >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812호)

2025.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장애인 등을 위한 스포츠관람관 보장 사업 근거 마련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2025. 7. 29.
3. 회 부 일: 2025. 7.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포츠 경기 입장권등 예매는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예매 경쟁이 치열해져 일부 경기의 경우 선예매나 선선예매를 통해서만 입장권등을 구매할 수 있어 고령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부족함.

이에 스포츠관람권 보장 사업을 구체화하는 한편, 매출규모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 장애인등에 대한 현장판매, 전화예매 등 입장권 구매 방식 적용과 일정 비율의 입장권등 우선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장애인등의 스포츠관람에 대한 실

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자, 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24조 신설).

Ⅲ. 검토의견

1. 장애인 등을 위한 스포츠관람권 보장 사업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인, 고령자 등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특별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3년마다 장애인등의 스포츠관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동조 제2항·제3항 신설).
- 또한, 매출규모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 장애인등에 대한 현장판매, 전화예매 등의 입장권 구매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입장권 등을 우선 판매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2항, 제24조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u>장애인의</u>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u>특별지원</u>)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u>장애인의</u> 스포츠관람권(<u>장애인이 장애인</u> 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관람	제18조의3(<u>장애인등의</u>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u>특별지원</u> 등) ① ----- -----장애인, <u>고령자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u> ----- <u>장애인등이 장</u>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애인등-----

-----다음 각 호의 사업

-----.

1. 장애인등의 스포츠 경기 입장권·

관람권·할인권 또는 교환권 등

(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 구매

접근성 증진을 위한 지원

2. 장애인등의 관람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용관람석 등 제

반 시설의 확충 및 설치 기준 마

련

3. 그 밖에 장애인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에 필요한 사업

② 매출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스포츠 경기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경우 장애인등의 입장권등

구매 접근성 및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등에 대하여 현장판

매, 전화예매 등의 방식으로 입장권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기장의 규모, 좌석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입장권

등을 장애인등에게 우선적으로 판매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장애인등

에 대하여 입장권등을 현장판매, 전

<신 설>

화예매 등의 방식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거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입장권등을 장애인등에게 우선적으로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포츠관람권 보장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등의 스포츠관람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사업의 수행 및 지원, 제2항에 따른 입장권등 구입 방식에 관한 조치 내용 및 우선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과태료) ①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 검토의견

- 현행법 제18조의3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스포츠 경기 입장권 판매가 현장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해감에 따라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층 등도 몇 초 또는 몇 분 내로 매진되는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기 쉽지 않아 소외계층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등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 사업에 대해서도 특별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장애인등을 위한 입장권 구매방법 및 입장권 우선판매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인등의 스포츠관람 현황 등에 대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최근 부천FC(부천종합운동장)가 홈 경기 가변석 일부를 현장 매표소 구매 전용으로 운영하고, 온라인 티켓 예매 교육을 진행하며, 롯데 자이언츠(사직구장)가 현장 매표소(3루 매표소) 구매

전용으로 배정된 좌석 입장권을 판매(만 65세 이상 등을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하는 등 개별 구단·경기장이 디지털 소외계층의 스포츠 관람 기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추세임.

-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장애인·고령자 등 소외계층의 스포츠 관람 기회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프로스포츠단 등 스포츠 경기업자¹⁾를 비롯한 각 스포츠산업 사업자²⁾가 소외계층의 스포츠 경기 관람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 특정한 방향의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① 법정용어 사용을 위해 개정안의 “장애인등”을 장애인, 노인 등으로 수정하고, ② 자율성 기반

1) < 스포츠 서비스업 분류 >

301 스포츠 경기 서비스업

30101 스포츠 경기업

3010100 스포츠 경기업

- 프로 및 실업 경기단체 등과 같이 스포츠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게임단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시] 프로야구단, 프로축구단, 동계스포츠 클럽, 실업경기단체, 체스 클럽, 사격 클럽, 프로 게임단

[제외] 단순 친목의 운동 동호회 활동

*KSIC(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스포츠 클럽 운영업’(분류코드 91191)에 해당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결과보고서」, 2024. 1.

2) [참고자료1] 스포츠산업 사업자 현황

으로 수익성 확보가 핵심인 스포츠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는 안 제18조의3제1항 각호, 제18조의3제2항부터 제5항, 제24조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3).

- 또한, 한국야구위원회 등 관련단체는 구단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4).

3) < 문화체육관광부 수정안 >

현행	개정안	문체부 수정안
제18조의3(<u>장애인</u> 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u>특별지원</u>)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u>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u> 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3(<u>장애인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등</u>) ① ----- ----- ----- -- <u>장애인·고령자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u> ----- ----- <u>장애인등이 장애인등</u> ----- ----- <u>다음 각 호의 사업</u> ----- ----- ----- -----.	제18조의3(<u>장애인, 노인 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u>) ① ----- ----- ----- <u>장애인, 노인 등의</u> ----- ----- <u>(장애인, 노인등이 장애인, 노인 등이</u> ----- ----- ----- -----.
<신설>	1. ~ 3. (생략)	<삭제>
<신설>	② ~ ⑤	<삭제>
<신설>	⑥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사업의 수행 및 지원, 제2항에 따른 입장권등 구입 방식에 관한 조치 내용 및 우선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의 범위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24조(과태료) ①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삭제>

4) < 관련 단체 의견 >

- 참고로,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을 위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음.

[소외계층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 관련 개정안 발의 현황]

개정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안일	주요 내용
스포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46)	박덕흠의원, 2025. 4. 3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 노인 등 정보기기 활용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스포츠를 관람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의 구매 경로 다양화,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안 제18조의3제2항 신설)
스포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70)	임오경의원, 2025. 4. 3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노약자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함(안 제18조의3제1항)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노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포츠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안 제18조의3제2항 신설)
스포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475)	김재원의의원, 2025. 5. 1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장애인·노인)이 스포츠 관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안 제18조의3제1항 신설)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는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을 위해 전용 관람권 배정, 할인 등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안 제18조의3제2항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에게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안 제18조의3제3항 신설)

- 한국야구위원회 : 장애인 및 고령자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은 공감하나, 법령에서 좌석 수, 예매 방식 등에 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경우, 경기장 규모, 구단별 운영 여건 등이 상이하여, 실제 현장에서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연한 현장 대응을 제약할 우려가 있음
- 한국프로축구연맹: 디지털 취약계층에 별도 좌석 배정 시 미판매 분에 대한 매출 피해 발생 가능, 민간 프로스포츠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우려(철도, 항공, 콘서트 등 타 업종에도 현장판매 좌석을 별도로 배정하지 않음)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항은 구단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프로농구연맹: 법안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일정 수준의 입장 수익이 발생하고, 좌석 점유율이 높은 종목을 한정하여 제도 실행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자료1] 스포츠산업 사업자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연도별 스포츠산업 현황

○ 사업체 수 현황

(단위: 개,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스포츠 시설업	38,279	39.2	44,168	38.0	45,192	37.5
스포츠 용품업	30,876	31.6	36,939	31.8	39,078	32.4
스포츠 서비스업	28,513	29.2	34,988	30.1	36,382	30.2
합 계	97,668	100.0	116,095	100.0	120,652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결과보고서」, 2024. 1.

○ 매출액 현황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스포츠 시설업		13,316	25.2	16,469	25.8	21,324	27.3
스포츠 용품업		25,412	48.0	30,624	47.9	32,916	42.1
스포츠 서비스업	체육진흥 투표권 포함	14,190	26.8	16,790	26.3	23,867	30.6
	체육진흥 투표권 제외	9,297	-	11,254	-	18,058	-
합계	체육진흥 투표권 포함	52,918	100.0	63,882	100.0	78,107	100.0
	체육진흥 투표권 제외	48,025	-	58,346	-	72,298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결과보고서」, 2024. 1.